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홍근 (기획예산처 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체계정비를 위하여 삭제된 조문이 포함된 문구를 수정하고(제6조),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이 개정(법률 제21752호, 2026. 6. 2. 공포, 2026. 9. 3. 시행)됨에 따라, 고지 기한 및 방법, 신고 사항 및 기한, 위반시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(제23조의2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제13조의2”를 “제2조의2”로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시설 임대시 고지 및 신고)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.

1. 임대기간(시작일과 종료일)
2. 임차인의 인적사항
3.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
4. 임대 목적 및 임차인의 사용 용도
5. 임대차 계약 체결일
6.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

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항 제6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별표 3 제2호라목(종전의 나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65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65조제1항제4호”로 하고,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	법 제65조 제1항제2호	300만원	500만원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3 제2호마목(종전의 다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65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5조제1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	법 제65조 제1항제3호	300만원	500만원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3 제2호바목(종전의 라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65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65조제1항제6호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(종전의 마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65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65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3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는 대상사업) 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” 이란 총사업비(제13조의2에 따 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2천억원(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 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)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 업을 말한다.		제6조(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는 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제2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제23조의2(시설 임대시 고지 및 신고)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 른 고지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 려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날부터 1 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
<신 설>				

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.

1. 임대기간(시작일과 종료일)

2. 임차인의 인적사항

3.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

4. 임대 목적 및 임차인의 사용 용도

5. 임대차 계약 체결일

6.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항 제6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4 - 3334